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

- * 공인중개사법 제32조(중개보수 등)
- ★ 부동산중개보수 전라북도조례 제4032호 (2015. 07. 03. 시행)

■ 주택의 부동산중개보수 요율

거래구분	フ・	래	금 액		요 율 상 한	한도액 (천원)	
	5천만원	미만			1천분의 6	250	
OH OH	5천만원	이상	2억원	미만	1천분의 5	800	
	2억원	이상	6억원	미만	1천분의 4	-	
교 환	6억원	이상	9억원	미만	1천분의 5	-	
	9억원	이상			1천분의 9 이내 (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)		
	5천만원	미만			1천분의 5	200	
	5천만원	이상	1억원	미만	1천분의 4	300	
임대차	1억원	이상	3억원	미만	1천분의 3	-	
	3억원	이상	6억원	미만	1천분의 4	-	
	6억원	이상			1천분의 8 이내 (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)		

- ※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.
- ※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에 포함한다.

■ 오피스텔 부동산중개보수 요월 (2015. 01. 06. 시행)

적 용 대 상	거 래 내 용	상 한 요 율	받고자하는 상한요율
전용면적 85㎡이하, 일정설비(전용입식부엌,	매매 • 교환	1천분의 5	「주택」과 같음
전용수세식 화장실, 목욕시설 등)를 모두 갖춘 경우	임대차 등	1천분의 4	'구락]과 실급
위 외의 경우	매매 •교환 임대차 등	1천분의 9 이내	

■ 그 외(토지, 상가 등)의 부동산중개보수 요욜

거 래 구 분	상 한 요 율	받고자하는 상한요율
매매ㆍ교환	1천분의 9 이내	
임대차 등	(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)	

■ 거래금액의 계산

- 1)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
 - 월 단위의 차임액 × 100 + 보증금 = 거래금액
 - 다만 위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<mark>만인 경우에는</mark> 차임<mark>액에 70</mark>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다.
- 2)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.
- 3)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.
- 4)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중개보수와 부가세는 별도임.

중개보수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여야 합니다.